

대형 유통업체, 매장 임대차 계약 일방 해지 못한다

■ 공정위,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가 임점업체에 일방적인 임대해지나 분담 비율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의거한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사용권장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판촉행사 진행시 비용 분담비율 50% 초과 못해 계약 중도 해지할 임대인은 6개월전에 통지해야

공정위에 따르면 표준 계약서에는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체가 임점업체에 인력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인원·인원 수 등을 지정하지 못한다. 아울러 판촉행사 진행 때에는 필요한 서면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비용 분담 비율도 50%를 초과하지 못하

도록 규정했다. 매장 인테리어의 경우는 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구분해 분담하도록 했다. 매장 바닥·조명·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용도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MD개편·매장리뉴얼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사유로 임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재시공할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단 좋은 위치로 이동하는 등 임점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는 비용 분담을 허용하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목적물,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계약의 해지·갱신 등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약 사항을 규정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임대료 액수, 임대차 목적물 내 영업업종 등을 직접 기입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반환 기준은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공제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임대료 계산은 임차인이 당월 임대료를 익월 합의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고 연체 때에는 합의된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임대료 변경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변경사항을 협의해 결정해야한다.

관리비는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직접비)과 공용부분 유지비용(공

익비)으로 나눠 상호 합의된 산정기준에 따라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해야한다.

계약갱신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비밀유지 의무·분쟁 조정 등 기타 사항은 기존 특약매입·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현행 사용 권장하고 있는 특약매입이나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 비중이 높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도 사용 비중이 결코 낮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표준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장 임대차거래 계약 체결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달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임대차 거래 계약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백화점 의류·신발 심의 의뢰 제품 절반 이상이 '품질하자' 때문

소보원, 3년간 분석

백화점에서 판매한 의류나 신발 등에 문제가 있어 한국소비자원에 심의 의뢰가 들어온 제품 중 절반은 품질하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의류나 신발 등에 문제가 발생한 백화점이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4554건을 분석한 결과, 50.9%(2319건)가 품질하자 때문이었다고 2일 밝혔다. 반면 소비자 과실은 17.3%, 세탁업자 과실은 2.3%였다. 백화점별 심의 의뢰 건수는 롯데(34.4%), 뉴코아(21.6%), 현대(17.8%), 신세계(11.8%) 순이었으며 이 중 품질하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백화점은 뉴코아(54.5%)였다. /연합뉴스

“성기능 개선”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식약처, 3개 제품 구매자제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간지 등에서 성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파워엠' '호아호아' '조인트케어' 등 3개 제품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파워엠(허브닥터 제조)은 “단 1회 섭취로 1일 후 시들한 남성을 확 바꿔드립니다”, 호아호아

(호아호아, 한독화장품식품사업부 제조)는 “중년의 고민 해결! 국내 최초 남성고 여성을 위한 성기능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의 문구를 사용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조인트케어(새롬한방 제약식품사업부 제조)는 “관절염, 통풍, 오십견, 퇴행성관절, 류머티스 이 모든 고통을 한 방에 끝!”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연합뉴스

빙과 4사 40개 제품 조사 26개 제품 가격 표시 안돼...반값 상술로 소비자 현혹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고질적인 '반값 아이스크림' 상술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현대제과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제품 40개(조사별 10개씩)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 조사결과 전체의 65%인 26개 제품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권장소비자가 표시를 금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인 것이다.

특히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표시가 없었고, 빙그레는 10개중 2개(참봉어짜만코, 투게터), 현대제과는 10개중 3개(쌍쌍바, 브라보콘, 참덱시모나)만 가격표시를 했다. 롯데제과는 빙빙바를 제외한 고드름, 더블비안코, 설레임 등 10개중 9개 제품(90%)에 가격을 표시해 가격 표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아이스

스크림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통업체의 상술에 종종 이용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제품인 설레임(롯데제과), 월드콘(롯데제과), 참봉어짜만코(빙그레), 투게터(빙그레), 브라보콘(현대제과)등 5개 제품은 권장소매가를 표시한 제품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동시에 유통되고 있었다.

유통업체의 입맛에 맞춰 선별적으로 가격표시를 해왔다는 방증이다. 가격표시가 없는 제품은 유통업체들의 기만적인 반값 마케팅에 종종 악용된다.

실제로 가격 표시가 없는 600원짜리 제품이 '50% 할인' 꼬리표를 달고도 원래 가격인 600원에 판매되거나, 원래 가격이 1200원짜리 제품은 1500원에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잘 알려진 제품이나 신제품 위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만, 판매처에서 가격 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반값 아이스크림 등 과대광고 문제로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된 지 3년 가까이 지났

■ 아이스크림 제조사별 가격표시 현황

제조사	제품명	가격표시	제조사	제품명	가격표시
롯데제과	고드름	○	빙그레	더위사냥	×
	더블비안코	○		메로나	×
	빙빙바	×		비비빅	×
	설레임	○/×		뽕도아	×
	아차차	○		수박바	×
	와쿠와쿠	○		요맘때	×
	월드콘	○/×		참봉어짜만코	○/×
	위쭈	○		캔디바	×
	조안나	○		키위아자	×
	주물러	○		투게터	○/×
LOTTE FOODS	거북알	×	호림	꿀호떡	×
	국화빵	×		누가바	×
	그릭요거트콘	×		바밤바	×
	대지바	×		부라보콘	○/×
	보석바	×		쌍쌍바	○
	빠빠코	×		아이스가이 피치	×
	아맛나	×		참덱시모나	○
	알초코바	×		탱크보이	×
	와삭바	×		롤라포	×
	쭈쭈바	×		호두마루	×

(출처:컨슈머리서치) * ○/×는 가격 표시, 미표시 제품 같이 유통되는 경우

지만 아직도 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이라며 "제조사들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 일곱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강적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매주 수요일 밤 11시 방송